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52호 2024. 7. 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2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2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5호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6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6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7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7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9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8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8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66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8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7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9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9호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96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5조의5제2항제24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제39호 및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4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4. 홍보행정
- 65. 구정소식지 발간
- 66. 구보 발간
- 67.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
- 68. 소셜미디어 운영
- 6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사무혁신, 제안제도)

제6조의 제목 “(행정안전문화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정문화국에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136호부터 제14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6호부터 제17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0호부터 제19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80. 구청사 및 동청사의 신·증축 용역 및 공사감독

18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182. 지출원 업무

183.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184.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85. 공유 재산 관리

186. 차량의 취득·처분 및 운영

187.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188. 정보시스템 운영

189.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190.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191. 소통1번가총괄

192. 민원분석 툴 운영

193.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 등

194. 대표 홈페이지 운영

195.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재정·인프라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196. 기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제1항 중 “대기보전과”를 “기후대기과”로, “산림조경과”를 “산림정원
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경제교통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6호부터 제6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7. 지적민원 처리
48.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4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50. 외국인 토지관리(취득·허가 신고 등)
51.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52.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53. 부동산 검인
54.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55.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56. 부동산 실명제 운영
5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8.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징수
59. 개발이익환수금 과태료 부과·징수

6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62.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
6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포함)
64.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65.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66.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67. 공간정보(GIS)운영
68. 지적공부 유지관리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 9. 비상대책 업무
-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 1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 12.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 13.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 14.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 15.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
- 16.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 17.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
- 18.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 19.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른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서구 주관부서란 중 “홍보정책실”를 “홍보정책과”로, “산림조경과”를 “산림정원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총괄조정관란의 “행정안전문화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중 총괄조정관란의 “환경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실무반란 다) 긴급 통신지원반의 “기획예산과”를 “정보통신과”로,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산림조경과”를 “산림정원과”로, 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정책실”를 “홍보정책과”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 총괄조정관란 “행정안전문화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실무반란 다) 긴급 통신지원반 “기획예산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산림조경과”를 “산림정원과”로, 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정책실”를 “홍보정책과”로 한다.

별표 8 총괄조정관란의 “행정안전문화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란의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보급·급식 지원반란의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정책과”로, 재정·홍보지원반란의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통신·전산지원반란의 “홍보정책실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홍보정책실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청년정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기보전과장”을 “기후대기과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홍보정책실”을 “홍보정책과”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주요업무계획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을 “정책기획과”로, 예산편성현황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평가결과보고서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기본통계자료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대기오존농도측정결과 공표부서란의 “대기보전과”를 “기후대기과”로, 질의 및 답변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공표부서란의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기획예산실장·홍보미디어과장”을 “행정문화국장·예산법무과장·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48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75	-				
2급	1	1				
4급	9	7	1	1		
5급	73	39	2	8	1	23
6급 이하 계	1,39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				
6급 상당 이하 계	2	-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제5조 관련)

관리기관	부서	구분		한시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계				17	
본청	분구추진 실무준비단	일반직	5급	1	2026년 6월 30일까지
			6급 이하	16	

*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정원

구분	총정원	한시정원	자체정원
인원(명)	22	17	5
비고	5급(1), 6급 이하(21)	5급(1), 6급 이하(16)	6급 이하(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

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징수시간”을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정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9.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의 비고 제6호마목 중 “제11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 관련)

구분		요금징수 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	
구 분청		09:00 ~ 19:00	x	24시간
검단출장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			
	블로대곡동			
	원당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검암경서동				
마전동				
아라동	임시청사 사용			

* 요금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은 각 청사 운영에 대한 관리사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② 체육시설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 외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③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 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을 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

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7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 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

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④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노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맹점에서”로, “이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별 캐시백”을 “사용자별 적립금”으로, “이용자가”를 “사용자가”로, “캐시백을”을 “적립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캐시백”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적립금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업무”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	------	------	--------

* 위 칸은 작성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서

업체명	대 (한 글)
법인등록번호	표 (생년월일)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자 (연 락 처)

본사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장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 적 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E-mail)		연락책임자 (휴대폰)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출액	부채비율 (%)
수혜이력	신규(), 1회(), 2회(), 3회(), 4회 이상()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기간	년
------	-----	------	---

우대기업 (해당사항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이전기업	서구기업인상 주민상	서구경제 단체가입	고용기업 (신청년도)	청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ESG경영 우수기업
						고용인원 ()인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 기	산 () 증서 () 타 ()	대출금리	%
------	----	----	------------	------------------	--------------------------	------	---

대출상담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상담확인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기금(재단)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3.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증빙서류(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65호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
3. 관내에서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부지원교육청, 인천서부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서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 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6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경제위원회”를 “환경경제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사실, 홍보정책실”을 “감사실”로, “행정안전문화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경제위원회”를 “환경경제안전위원
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제교통국”을 “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를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은행		
	대출신청기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 2. 금연구역 지정범위
-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

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⑤ 대상지역	⑥ 명 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연면적(m ²)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반대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28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7.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7-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1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28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7-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24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4-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22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49-6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길 11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7-1	인천광역시 서구 보들로 140 (오류동)	20121025	"가슴에 불도둑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6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9-6	인천광역시 서구 보들로 173 (오류동)	20121025	"가슴에 불도둑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1366호

공인 등록 ·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구매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등록 · 폐기일 : 2024년 7월 8일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2024. 7.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가좌2동장인 / 민원전용1	기관장인	2.1cm x 2.1cm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사유	비고
1	가좌2동장인 / 민원전용	기관장인	2.1cm x 2.1cm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가좌2동민원전용	기관장인	2.4cm x 2.4cm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	

제1852호
 등록 공인 내역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4. 7. 8.(월)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가좌2동장인/민원전용1 (인증기)	인증기 교체	2024년 7월 8일	

☐ 폐기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가좌2동장인/민원전용 (인증기)	인증기 교체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2동민원전용 (인증기)	인증기 교체	2024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137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7.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07. 08. ~ 2024. 07. 23.(16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83두3052 등 1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183두3052	그랜저(GRANDEUR)	김**	2024.06.03.
2	인천80거2660	봉고프런티어	유**	2024.06.04.
3	07고2439	Mercedes-Benz EQS450 +	케**	2024.06.05.
4	65루3756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 Q4	하**	2024.06.11.
5	66라6832	CC 2.0 TDI	이**	2024.06.12.
6	45나4794	BMW 530i xDrive Luxury	하**	2024.06.21.
7	172러5472	GV80	조**	2024.06.24.
8	378서9087	GLC300 4Matic Coupe	하**	2024.06.25.
9	126노3580	Mercedes-Benz GLS580 4MATIC	하**	2024.06.26.
10	255더8827	벤츠 GLE300 d 4MATIC	하**	2024.06.26.
11	339나6998	말리부 2.0 TURBO	조**	2024.06.27.
12	89라7996	봉고III 1톤	이**	2024.06.27.
13	87가8649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상**	2024.06.28.
14	76도9818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고**	2024.06.28.
15	134고8800	Mercedes-Maybach S580 4MATIC	하**	2024.06.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419호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의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결정(안) 조서 >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	-	증)17,849.6	17,849.6	제1종일반 주거지역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21	중1-57 석남동 322-12	소2-180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	인고 제98호 '06.6.5.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64	중1-57 석남동 326	소3-1 석남동 산21-7	일반 도로	-	인고 제98호 '06.6.5.	-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72	소3-1 석남동 산23-11	소3-1 석남동 산17-3	일반 도로	-	인고 제98호 '06.6.5.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주차장	노외	서구 석남동 322-75 일원	222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공원	소공원	서구 석남동 322-32 일원	1,358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가) 건축 분야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층수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석남동 554-1번지 외4필지	444.0	424.3	2	-

※ 공동이용시설 상세 건축계획,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에 따름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및 수량	추진 시기
A. 공동체 기반 구축	A-1. 신속한 거점공간 확보	- 부지매입	272㎡	2024년
		- 마을 사랑방 조성	1개소(약 122평)	"
	A-2. 소통하는 석남3동	- 마을 게시판 설치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 마을행사 및 홍보비	2개소 -	"
B. 안전안심 마을 조성	A-3. 공동체활동 기반 마련	- 이동식 CCTV 설치	1개소	"
		- 배출안내 조명	2개소	"
	B-1.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개선	- 의류수거함 교체 -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6개소 19개소	"
C. 안전한 마을 인프라	B-2. 골목경관 통합 개선	- 방치된 수목 및 장기적치물 정비	1개소	"
		- 미끄럼방지 포장	1,500㎡	"
	C-1. 안심보행로 조성	- 안전난간 설치 - 주차금지 시설물	300m 100m	"
D. 주민 휴게공간 조성	C-2. 범죄안전 확보	- CCTV+ 비상벨	1개소	"
		- 옹벽 벽부등 설치	100m	"
	D-1. 생활쉼터 조성	- 부지매입 - 쉼터조성	159㎡ 1식	"

※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에 따름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도의 가구 계획은 하지 않으며, 가구의 장변이 15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획지계획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배제
- 대지 분할·합병시 적정대지규모를 330㎡로 권장하고 200㎡ 미만으로의 분할을 금지

구분		면적기준	비고
다락방 지구	최소대지규모	90㎡	규제
	최소대지분할규모	200㎡	규제
	적정대지규모	330㎡	권장

※ 주)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분할은 제외함

2. 최소대지분할규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사도개설 포함) 설치, 대지교환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다락방 지구단위계획[제2012-286호(2012. 11. 26)]에 따름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다락방 지구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 ◦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200% 이하	
		높이	◦ 4층(15m)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한다. ◦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이 따르도록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다락방 지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주택)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 ◦ 경사지붕 설치기준(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 공동주택 : 용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 - 기타(점포주택 포함)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 - 꺾임지붕 및 맨사드지붕 불허 ◦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미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에는 1.0m 이하의 식재형담장(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가능한 한 식재형 담장을 권장 ◦ 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설치시는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자연석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 사용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를 사용 ◦ 수목, 토양 등 자연색 배경을 고려하여 YR계열 권장 ◦ 권장색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6~9 / 채도 3 이하 -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3~8 / 채도 4 이하 -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3~7 / 채도 4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열우물·이화·상야지구)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큰도장지구 외 32개지구)

※ 다락방 지구단위계획[제2012-286호(2012. 11. 26)]에 따름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	다락방 지구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의 예외) 전면공지 조성시 인접도로나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 법정 대지내 조정 및 공개공지 조성면적을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하여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유도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 가로형간판의 사이즈는 전면 점포 가로폭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건물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제한 광고물의 유형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네온사인, 점멸 등의 사용을 금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진입도로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정연한 가로환경조성 및 주요시설의 조망권 확보 전면공지에 의해 확보된 보행공간의 포장패턴은 전면도로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확보

※ 다락방 지구단위계획[제2012-286호(2012. 11. 26)]에 따름

6.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 정비계획 수립(안) 참조

○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공람기간 : 2024. 7. 8. ~ 2024. 8. 8(32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3194)
-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현장지원센터(서달로 20, 3층)

붙임 주민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